5월단체, 43년만에 계엄군 묘역 참배 '화해의 첫 발'

5월 3단체 어제 서울현충원 참배····특전사 단체는 내달 5·18묘지 참배 지속적 교류 참배키로···"진상조사 안 끝났는데 섣부른 면죄될라" 비판도

5월 3개 단체(5·18민주화운동 유족회·부상자회 ·공로자회)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계엄군 묘 역을 43년만에 처음으로 참배하면서 특전사 단체 와 화해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참배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양측이 참 배·교류 사업 등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기로 약속 했다는 점에서다.

5월 단체는 17일 5월 3개 단체 회장단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5·18 당시 숨진 특전사, 경찰 등 묘역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정성국 5·18공 로자회장, 홍순백 5·18유족회 상임부회장 등 총 5 명이 사병(28묘역), 장교(29묘역), 경찰(8묘역) 묘역을 차례로 돌며 참배했다. 묘역 안내는 최익봉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총재가 맡았다.

특전사동지회는 다음달 19일 최익봉 총재 등 특 전사 출신 100여명과 함께 광주시 북구 망월동 5· 18국립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기로 했다.

5월 단체가 계엄군의 묘역을 참배한 것도, 특전 사 단체가 5·18민주묘지를 공식 참배하는 것도 43 년만에 처음 이뤄지는 일이다.

5·18부상자회는 특전사 단체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단체와 공동으로 오월어머니들을 위한 봉사활동 등 교류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발 맞춰 5월 단체 또한 지속적으로 국립현충원 계엄군 묘역을 참배할 계획이라고 5·18부상자회는 밝혔다.

구체적인 공동 사업 내용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

정할 방침이다.

5월 단체는 1980년 5월 항쟁 당시 특전사·공수 부대 등이 투입돼 유혈진압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특전사 출신 인사와 교류를 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5월 단체는 특전사 단체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진압 작전에 투입된 부대원들은 군사 정권의 부당한 명령을 따라야만 했던 이들로, 지난 43년 동안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점을 이해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11일 특전사동지회 광주시지부 관계자 3명이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를 방문해 5월 단체에게 감귤 20박스를 전달한 것이 계기가 됐다. 앞서 5·18 당시 계엄군이었던 박성현 대위가 지난해 12월 광주국군병원 청소봉사를 하고, 5·18 이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증언을 한 점도 5월 단체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5·18부상자회는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참배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조사도 끝나지 않았으며 곧 청문회를 앞둔 때에 '화해'와 '호국영령'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섣부른화해는 가해자들에 대한 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여론조차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행보를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에 불과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5월단체 내 회원들도 이번 참배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5월단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등 5월 단체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5·18 당시 숨진 계엄군·경찰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체들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은 인정하지 만 광주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는지는 의문이 다"면서 "광주시민의 중심에 서서 충분한 의견을 수 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 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최근 5·18 당시 계엄 군이었던 이들이 나서서 5·18 단체를 찾아와 사죄 하고 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5·18 이후 43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 이제는 서로가 겪은 아픔을 나누고 이해하는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여중생 제자 그루밍한 학원강사…법원, 강하게 질책

"양심의 가책 느끼느냐" 꾸짖어 광주지법, 집행유예 3년 선고

"당신(피고인) 딸은 귀하고 남의 딸은 소중하지 않습니까"(판사)

지난 9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 광주지법 형사13부 심재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원강사인 피고인 A씨를 강하게 질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학원 수강생인 중학교 2 학년 여학생을 성추행·간음한 혐의로 이날 법정 에 섰다. A씨는 피해자인 중학생을 '사랑한다' 는 등의 이유로 학원 강의실 등지에서 간음한 것 으로 조사됐다.

"딸이 있어요"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35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 딸이 중2인데 30대 학 원강사가 추행하고 간음하려 한다면 어떤 심정 이겠어요"라고 묻자 A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범행장소도 강의실이고 어린아이가 여자로 느껴졌냐", "일말의 양심의 가책은 느끼느 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딸같은 학생에게 성 관계를 요구했냐"는 질문을 연이어 쏟아냈다.

하지만 A씨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 개만 푹 숙였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시기가 그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 아이를 낳은 시기와 겹친 점을 들어 A씨가 "중학생인 제자를 사랑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싫었지만 A씨가 지속적으로 졸라 소극적으로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 강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무엇이 좋아 중학생이 30대인 당신을 좋아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 일명 '성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을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나와 너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너는 어리지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다"라고 말하며 다가가면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그루밍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가장 큰문제는 그루밍 범죄의 경우 강제성을 부인할 증거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사성행위 및 간음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리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수강과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점,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지 만 자유의사를 제약하는 등의 위력은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 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기자 jusbh@kwangju.co.kr

검·경, 동시 조합장 선거 앞두고 본격 단속

검찰과 경찰이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 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50일 앞두고 본격적인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전남경찰청은 17일 유관 기관인 광주시·전남도 선관위 등 업무담당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갖고 '3·8 조합장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오는 3월 8일 광주·전남 농협·수 협·산림조합 73곳(광주 18곳·전남 55곳)의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검·경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금품 살포·수 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단키로 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 명목으로 불법

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기준 전남에서 3·8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광주에서는 검찰

과 경찰의 수사망에 오른 대상자가 아직 없는 것으

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후임병 눈에 1시간여 손전등 비춰 가혹행위 20대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경북 포항에서 군 생활을 하던 2021년 4

월 2일 밤 10시께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B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추고, B씨를 침 대에 눕혀놓고 30분 이상 허공에 다리 구르기를 시 키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직 어린 사회 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했다"고 양 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처분하기 힘든, 부동산

교환 하실분, 20년 노하우. 010-3605-5000